

나. 경찰관서 동행요구

외교특권을 가진 외교관은 신체를 구속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서로 강제연행할 수는 없으나, 피의자로서가 아니라 사건 관계인으로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납득시켜 경찰관서 동행 요구

- ☞ 동행을 거부할 경우 현장 또는 현장주변의 적당한 장소에서 문답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정을 청취

다. 피의자 진술확보

- (1) 외교특권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진술청취(자필 진술서 등)는 물론 신문조서의 작성, 나아가 지문채취도 가능하므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것임을 잘 설득하여 동의를 얻도록 노력
- (2) 진술을 거부하고 퇴거할 경우에는 강제로 억류하지 않음

라. 목격자 등 진술확보

목격자, 피해자 등의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을 작성하고 진상을 명백히 규명한 후, 필요에 따라 외교통상부(주한공관과)를 통해 해당 외교관이 소속된 외국공관에 수사협조 요청

마. 보고

외교관이 관련된 범죄 발생시에는 인적사항·사건개요 등을 신속히 상습기관에 보고, 지시받아 처리

제2절 일반외국인 범죄 처리요령

1. 지구대에서의 처리

가. 신병확보, 신원확인

- (1) 현행범 체포 등의 절차에 따라 신병확보
- (2) 「미란다원칙」 고지 후 확인서를 수사서류에 첨부
 - ☞ 영장에 의한 외국인 체포 뿐만 아니라 영장없이 외국인을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명확히 고지(영문 미란다원칙 붙임6)
- (3) 여권제시 요구
 - ☞ 사진 등 인적사항, 체류자격·기간 및 외교특권자 유무 확인

나. 피해자, 참고인 및 증거물 확보

- (1)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인적사항 및 피해사항 확인
- (2) 현장에서 피해품, 범인의 유류물품 등 증거물 확보

다. 파출소 동행 및 신병보호

- (1) 동행시 가혹행위 등 피의자 인권침해 행위 엄금
- (2) 도주 및 기습대비 2인 이상 동행
- (3) 자해 또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변보호에 유의

라. 보고 및 경찰서 인계

관계서류 작성, 경찰서로 피의자 인계

2. 경찰서에서의 처리

가. 기초사실 조사

외교특권자 유무 및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 조사

- ☞ 입건한 피의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입국 사무소 등에 인계

나. 영사기관 통보

- (1)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따라 즉시 피의자에게 관계국 영사 내지 외교담당자(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 통보 및 영사기관과 접견·교통할 수 있음을 고지
- (2) 피의자가 관계국 영사 내지 외교담당자(영사기관)에 통보를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체포(구속) 사실 통보 (주한 외국공관 연락처 붙임7)
 - ☞ 합법·불법체류를 불문하고 통보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반드시 작성

러시아국적 피의자의 경우, 자국 영사기관에 체포(구속) 사실 통보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과러시아연방간의영사협약」에 따라 반드시 체포(구속)사실을 통보해야 함
- (3) 통보 및 면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위 사실을 진술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반드시 기재

다. 서명·날인

- (1) 진술서 등 수사서류 작성시 조서말미에 서명만으로 날인 같음
- (2) 수사서류에 통역 및 번역관을 명기하고 서명 날인

라. 출·입국 규제

- (1) 해외도피 우려 있는 자는 신속히 출국을 규제하여 수사 및 재판권 확보
- (2) 사건종결시까지 출국을 정지시키고, 범죄 후 소재불명 된 자는 출국시에 검거

부 록 - 1

· 관련양식 등



[붙임 1] : 범죄기초조사서

Criminal Case Information Form			
소 속 Unit			
성 명 Name			
계 급 Rank/Grad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사회보장번호 SSN			
전화번호 Telephone	직장 Duty	주택 Home	
보호자 인적사항 Sponsor's information(When applicable-in case if family member)			
성 명 Name			
소 속 Unit			
계 급 Rank/Grade		사회보장번호 SSN	
생년월일 Date of birth			
전화번호 Telephone	직장 Duty	주택 Home	

○○○○경찰서

수신 경찰서장 2005. 00. 00
참조 보안(외사)과장
제목 미군인(미군속, 미군가족) 등 범죄() 발생보고

아래와 같이 미군인(미군속, 미군가족)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명 :
주민번호 :
사회보장번호 :
주거 :
국적 :

2.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
주거 :
주민번호 :

3. 범죄사실

○○○○경찰서

수신 ○○검찰청 검사장 2005. 00. 00
참조 행협 담당검사
제목 미군인(미군속, 미군가족) 범죄() 발생보고

아래와 같이 미군(미군속, 미군가족)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명 :
주민번호 :
사회보장번호 :
주거 :
국적 :

2.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
주거 :
주민번호 :

3. 범죄사실

○○○○경찰서장

[붙임 3] : 구금인도요청서 및 신병인수증

CUSTODY REQUEST AND RECEIPT (USFK REG 1-44) 구금인도요청서 및 인수증		MPR No. 한병보고서 번호	Date 일자:
To 수신 :		From 발신 :	
○○ Police St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Para. 5c th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request is hereby made to the prosecutor, or through the arresting agency to the prosecutor for the transfer of custody to the US authorities of (name, rank, and unit of the suspect/spons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Para. 5c of th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the said (name of suspect) will be held ready for appearance during an official investigation or before a competent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such times and places as required by legal process.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5항(다)에 의거, 구금된 (성명, 계급, 부대명)의 신병을 미국당국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검사에게 또는 체포관서를 경유하여 검사에게 요청합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5항(다)에 따라 상기(피의자 성명)은 법적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느 곳에든지 대한민국의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구금하여 두겠습니다.)			
TYPED NAME OF COMMISSIONED OFFICER 장교(사관)의 성명	RANK 계급	SIGNATURE 서명	AREA PHONE NO. 지구 헌병대 전화번호
CUSTODY RECEIPT 구금인수증			DATE 일자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this date received custody of the person of (name of the individual) stationed at (nearest Korean town or city) from the (appropriate korean authority) pending possible investigating and/or trial resulting from (brief description of the alleged offense) (본인은 금일 (사건의 내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수사 또는 재판에 대비하여(가까운 도시나 동 리명)에 구금되었던 (성명)의 신병을 (한국기관) 당국으로부터 인도 받았음을 확인함.			
TYPED NAME 성명	RANK 계급	SIGNATURE 서명	ORGANIZATION 소속기관
Copy to : ROK Authorities ; USFK, ATTN : FKJA-IA:Cdr & Major Subordinate Cdr of Indiv/Sponsor; MPR File.			

[붙임 4] : 출석요구서

○○ POLICE STATION		발부 번호	2005-1
TO	: ○○	2005. 00. 00	
수신	: ○○ 지역 헌병대장		
SUBJECT : REQUEST FOR APPEARANCE OF SUSPECT			
제목	: 피의자 출석요청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 6(a), Article 22, and Para. 2 of the agreed understanding to the agreed minute re Para. 3(b) Article 22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Request is hereby made to you that the following individual be appeared with appointed SOFA representative at the Office of ○○ Section ○○ Police Station, at (○○:00) 00day of Month 20○○. (주한미군위협정 제22조 제6항(가) 및 동조 제3항(다)에 관한 합의 의사록에 관한 합의양해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을 미국 정부대표와 함께 ○○경찰서 ○○계로 20○○년 00월 00일 ○○:00까지 출석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CHARGE WITH(죄명) : DATE OF OCCURRENCE(발생일시) :			
SUBJECT	UNIT(소속) : RANK(계급) : NAME(성명) : SSN(사회보장번호) :		
INVESTIGATOR IN CHARGE			
REMARKS			
○○, ○○ ○○ THE JUDICIAL POLICE OFFICER, ○○ POLICE STATION			

[붙임 5] : 미국 정부대표 임명장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00, 00, 2005
주한미군 사령부 법무감실(전화번호)

SUBJECT : Appointment of US Representative
제목 : 미국 정부대표 임명

SFC Norman A. Bernard
HHC, 1st Signal Brigade
APO AP 96205

Pursuant to Article 22, Para. 9(g), US-ROK SOFA and the Agreed Minute thereto, you are appointed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ensure that all rights to which the following named individual(s) is entitled are protected during all preliminary investigation, examinations, pretrial hearing, or any other proceedings at whic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quires the presence of :

(주한 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9항(사)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아래 사람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 전 심리 또는 여하한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가 보호되는 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귀하를 미국 정부 대표로 임명한다.)

SGT Latasha D. Washington.

FOR THE JUDGE ADVOCATE :

○○○
Paralegal Specialist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붙임 6] : 영문 미란다 원칙

현행범 체포시 고지사항

- ◎ 귀하는 ○○죄를 범한 현행범이므로
As a flagrant offender of ○○ crime,
-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하겠습니다.
you are under arrest without a warrant pursuant to Article 212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 ◎ 귀하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 ◎ 귀하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You have the right to appoint a lawyer and have him/her present with you while you are being questioned.
- ◎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You have the right to speak for yourself.

긴급체포시 고지사항

- ◎ 귀하는 언제, 어디서 ○○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You are under the suspicion of ○○ Crime in Place committed on Month Date, Year.
- ◎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의해 영장없이 긴급체포 하겠습니다.
As you are subject to one of the elements of Emergency Arrest, you are under arrest without a warrant pursuant to Article 200-3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 귀하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 귀하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You have the right to appoint a lawyer and have him/her present with you while you are being questioned.

◎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You have the right to speak for yourself.

□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시 고지사항

◎ 귀하는 언제, 어디서 ○○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You are under the suspicion of ○○crime in Place committed on Month Date, Year.

◎ 체포(구속)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제 201조) 규정에 의한 이 체포영장(구속영장)에 의거 체포(구속) 하겠습니까.

As you are subject to one of the elements for arrest(detention), you are under arrest(detention) with this warrant of arrest(detention) pursuant to Article 200-2(201)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 귀하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 귀하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You have the right to appoint a lawyer and have him/her present with you while you are being questioned.

◎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You have the right to speak for yourself.

[붙임 7] : 주한 외국공관 연락처

2005. 1. 1. 현재

국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아프가니스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7-2번지 형우 베스트빌 101호	793-3535	795-2662
알제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2-6	794-5034/5	792-7845
아르헨티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534 천우빌딩 5층	793-4062	792-5820
호주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1층	2003-0100	722-9264
오스트리아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9층, 1913	732-9071/2	732-9486
방글라데시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7-18 우성빌딩	796-4056/7	790-5313
벨라루스	서울시 중구 신당동 432-1636	2237-8173	2237-8174
벨기에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94	749-0381	797-1688
브라질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141, 인화당빌딩 4-5층	738-4970	738-4974
브루나이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7층	399-3707/8	399-3709
불가리아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23-42	794-8625/6	794-8627
캄보디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7-162	3785-1041	3785-1040
캐나다	서울시 중구 무교동 45, 코롱빌딩 10-11층	3455-6000	3455-6123
칠레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5-5번지 대연각빌딩 1801호	779-2610	779-2615
중국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54번지	738-1038~40	738-1077
콜롬비아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3층	720-1369	725-6959
콩고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9, 세종대우빌딩 Apt 702	722-7997/58	722-7998
코트디부아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94-4, 청암빌딩 2층	3785-0561/2	3785-0564
코스타리카	서울 마포구 도화동 50-1 일진빌딩 7층	707-9249	707-9255
체코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21	720-6453	734-6452
덴마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60-199, 남송빌딩 5층	795-4187	796-0986
도미니카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310, 태평로빌딩 19층	756-3513	756-3514
에쿠아도르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제일은행빌딩 19층	739-2401/2	739-2355
이집트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6-1	749-0787/9	795-2588
엘살바도르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삼성생명보험 빌딩 20층	753-3432/3	753-3456

국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핀란드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602	732-6737	723-4969
프랑스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30	3149-4300	3149-4310
가봉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8-20 유성빌딩 4층	793-9575	793-9574
가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5-4, C.P.O. Box 3887	3785-1427	3785-1428
독일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08-5	748-4114	748-4161
그리스	서울시 중구 장교1동, 한화빌딩 27층	729-1401	729-1402
과테말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1, 롯데호텔 3422	771-7582/877	771-7584
교황청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2	36-5725	736-5738
온두라스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 종로타워빌딩 22층	738-8402	738-8403
헝가리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103	792-2105	792-2109
인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7-3	798-4257	796-9534
인도네시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783-5675	780-4280
이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126	793-7751	792-7052
아일랜드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대한화재해상보험빌딩15층	774-6455	774-6458
이스라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21 대공빌딩 15층	739-8666	739-8667
이태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398	796-0491/5	797-5560
일본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8-11	2170-5200	734-4528
카자흐스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84-24 북악빌리지 11호	394-9716	395-9766
쿠웨이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54-1	749-3688	749-3687
라오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7-93	796-1713/4	796-1771
레바논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48	794-6482	794-6485
리비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5	797-6001	797-6007
말레이시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1	795-2607	794-5488
멕시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3-6	798-1694	790-0939
몽골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3-5	794-1350	794-7605
모로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70-3 유엔빌리지 S-15	793-6249	792-8178
미얀마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1, 724-1	792-3341	796-5570

국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네덜란드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4층	737-9514	735-1321
뉴질랜드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8층	730-7794	737-4861
나이지리아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10-19	797-2370	796-1848
노르웨이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58-8	795-6850	798-6072
오만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09-3	790-2431	790-2430
파키스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2동 124-13	796-8252	796-0313
파나마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66, 현대해상화재빌딩 6층	734-8610/2	734-8613
파라과이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99, SK빌딩 2층	730-8335	730-8336
페루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55-5 고려 대연각센터 2002호	757-1735/7	757-1738
필리핀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 901호	577-6147	574-4286
폴란드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70	723-9681	723-9680
포르투갈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 원서빌딩 2층	3675-2251/5	3675-2250
카타르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09-5	798-2444/6	790-1027
루마니아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104	797-4924	794-3114
러시아	서울시 중구 정동 34-16번지 (100-120)	318-2116/8	754-0417
사우디아라비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12	739-0631/5	732-3110
세르비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0 한남타워 2층	797-5109	790-6109
몬테네그로			
싱가폴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28층	774-2464	773-2465
슬로바키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89-1	794-3981	794-3982
남아공화국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37	792-4855	792-4856
스페인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52	794-3581	796-8207
스리랑카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2002호	735-2966	737-9577
수단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24	793-8692	793-8693
스웨덴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36, 한효빌딩 12층	738-0846	733-1317
스위스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32-10	739-9511	737-9392
태국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7	795-3098	798-3448

국명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튀니지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17	790-4334	790-4333
터키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4-52, 비비안 Cor. 4층	794-0255	797-8546
우크라이나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97	790-5696	790-5697
아랍에미리트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5-5	790-3235	790-3238
영국	서울시 중구 정동 4	3210-5500	725-1738
미국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	397-4114	735-3903
우즈베키스탄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 701	574-6554	578-0576
베네수엘라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100, 제일은행빌딩16층 110-702	732-1546/7	732-1548
베트남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58	738-2318	739-2064
유럽공동체	서울시 중구 신문로1가 166, 세안빌딩16층	735-1101	739-3514
IF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7-7 서울외대 총장	399-0905	2057-6922
IMF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가 한국은행빌딩 별관 5층	759-4768	759-4769
IVI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내	872-2801	872-2803
UNDP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94-4	790-9562	749-1417
UNHCR	서울시 중구 정동 3-7, 대한성공회 빌딩 402호	773-7011	773-7014
UNIDO-IPS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한국국제협력단내	747-8191	747-8193
UNMCK	부산시 남구 대연 4동 779	051)624-2165	051)624-2165
WHO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2동 306	503-7533	502-7818

※ 영사관(부산, 제주 소재) 및 대표부

국명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타이페이대표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6층	399-2772/3	서울
일본총영사관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47-11 (601-010)	051)465-5101/6	부산
러시아총영사관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9-1 외환은행빌딩 8층 (600-014)	051)441-9904/5	부산
중국총영사관	부산시 해운대구 우 2동 1418 (612-022)	051)743-7985	부산
일본총영사관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064)42-9501/6	제주

부 록 - 2

. SOFA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 정의

본 협정에 있어서,

-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한다.
- (나)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국적 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 (다)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 (1)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제15조 초청계약자

1. (가)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나)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다)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

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본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전기 제1항에 규정된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안전상의 고려, 관계업자의 기술상의 적격 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합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그 지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때,

(나) 이러한 자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 관계의 사업 활동 이외의 사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다)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위법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3. 이러한 자는, 그의 신분에 관한 합중국 관계 당국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본 협정상의 다음의 이익이 부여된다.

(가)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출입 및 이동,

(나)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에의 입국,

(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면제,

(라)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3조에 규정된 기관의 용역 이용,

(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것,

(바)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군표의 사용,

(사) 제20조에 규정된 우편 시설의 이용,

(아) 공익사업과 용역에 관하여, 제6조에 의하여 합중국 군대에 부여되는

우선권, 조건, 사용료나 요금에 따르는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
(자) 고용 조건 및 사업과 법인의 면허와 등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의 면제.

4. 이러한 자의 도착, 출발 및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의 거소는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수시로 통고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자가 제1항에 규정된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하고 사용하며 또한 이전하는 감가상각자산(가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조세 및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이러한 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의 보유, 사용, 사망에 의한 이전 또는 본 협정에 따라 면제받는 권리를 가지는 개인 또는 기관에의 이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투자를 위하여거나 기타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어떠한 무체재산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이러한 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어느 것의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의 과세 기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민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과세 기관에 어떠한 대한민국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항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의 첫 단에 규정된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

거소가 있다고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조세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8.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 제5항, 제7항 (나), 제9항 및 동 관계 합의의 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은 조속히 합중국 군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이러한 통고를 접수하면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바에 따라 전기의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형사재판권

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다)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당해국에 대한 반역,

(2) 방해 행위('사보타아지'), 간첩 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 또는 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령의 위반.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2)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나)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4. 본조의 전기 제 규정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그들을 구속할 당국에 인도함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 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수사 및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고 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행한 구금에 관한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을 계속함에 있어서 동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2001. 1. 18 서명된 개정협정 제1조에 의해 개정>

(라) 제2항 (다)에 규정된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피의자는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하에 두어야 한다.

6.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범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수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압수 및 상당한 경우에는 그의 인도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은 인도를 하는 당국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환부할 것을 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모든 사건의 처리를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7. (가) 사형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이 같은 경우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금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 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이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 시설 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의 구금 시설 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8. 피고인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나 합중국 군 당국 중의 어느 일방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에 있거나 복역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그의 형이 감형되었거나 집행정지되었을 때 또는 사면되었을 때에는, 그 피고인은 타방 국가 당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판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항의 어떠한 규정도,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그자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범죄를 구성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군기 위반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9.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가)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나) 공판 전에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 사실의 통지를 받을 권리,
- (다) 자신에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고 그를 신문할 권리,
- (라) 증인이 대한민국의 관할 내에 있는 때에는, 자신을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구할 권리,
- (마)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조건에 따라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비용의 보조를 받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 (바)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사)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

10. (가) 합중국 군대의 정규 편성 부대 또는 편성대는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대의 군사 경찰은 동 시설 및 구역 안에서 질서 및 안전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시설 및 구역 밖에서는 전기의 군사 경찰은, 반드시 대한민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과의 연결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

11.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

재판권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은 즉시 그 적용이 정지되고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12. 본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전에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1950년 7월 12일자 대전에서 각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정

제1조

제22조 제5항 (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기소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조

(나)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에서 공급할 수 없는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3국의 국민인 자는 합중국에 의한 고용만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음을 양해한다. 이러한 자와 제3국의 국민으로서 본 협정이 효력 발생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 군대를 동반하는 자는 군속으로 간주한다.

제15조

1.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것에 부가하여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은 제15조에 규정된 자를 본조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자의 고용인으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합중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없다면 제15조에 포함된 특권을 향유한 자는, 그들의 체류 목적이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부합하는 동안에 한하여 이러한 특권을 가진다.

제22조

본조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 이외의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대의 인원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협정, 약정 또는 관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하에서 합중국 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

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추후의 입법, 헌법개정 또는 합중국 관계 당국에 의한 결정의 결과로서 합중국 군사 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 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다)에 관하여

각 정부는 본 세항에 규정된 안전에 관한 모든 범죄의 명세와 자국 법령상의 이러한 범죄에 관한 규정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3항 (가)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 군 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 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반증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증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주한 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3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다)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2.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합중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대한민국 관계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합중국 군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3.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범한 범죄 때문에 합중국 법원에 소추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판은 대한민국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 (1) 다만, 합중국의 법률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 또는
 - (2) 군사상 긴급사태의 경우 또는 사법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판을 행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러한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러한 의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시에 부여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당국이 진술하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나) 재판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의 장소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판결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의 시행과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한민국 관계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항 (다)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사건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한다. <신설 2001. 1. 18>

2.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그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신설 2001. 1. 18>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시 또는 그 이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 <신설 2001. 1. 18>

(가) 살인,

(나) 강간(준강간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포함한다),

(다) 석방대가금 취득목적의 약취·유인,

(라) 불법 마약거래,

(마) 유통 목적의 불법 마약제조,

(바) 방화,

(사) 흉기 강도,

(아) 위의 범죄의 미수,

(재)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카)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타)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4. 피의자가 혐의범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라 함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법적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법적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설 2001. 1. 18>

5. 재판 전 구금의 “필요”라 함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또는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 잠재적 증인, 또는 그들의 가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를 이유로 피의자의 구금이 요구된다는 사법적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법적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설 2001. 1. 18>

6. 대한민국의 법령상 허용되는 모든 경우, 피의자의 체포·구금 또는 체포·구금을 위한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피의자에 의하여 그리고 피의자를 위하여 자동적으로 신청되고 개최된다. 피의자와 그의 변호인은 동 신문에 출석하며, 참여가 허용된다. 합중국 정부대표 또한 동 신문에 출석한다. <신설 2001. 1. 18>

7. 보석 신청권과 법원에 의한 보석심사를 받을 권리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 그의 변호인 또는 그의 가족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권리이다. <신설 2001. 1. 18>

8.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질병·부상 또는 임신중인 특별한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이 재판 전 구금의 포기 또는 연기를 요청하면 대한민국 당국은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8>

9.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8>
10.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이 대한민국 당국으로 인도된 이후, 대한민국 당국은 어느 때든지 합중국 군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8>
11. 합중국 군 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 인도를 요청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8>

제6항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러한 당국이 행하는 소송 절차에 필요한 증인을 출석하도록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증인이나 피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을 받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출석이 대한민국 법률상 강제적인 것을 조건으로 그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그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출석 불능의 예정 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서류의 송달이 군사 시설이나 구역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송달인에 의하여 집행될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송달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관련된 대한민국 형사 소송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즉시 모든 형사상의 영장(구속영장, 소환장, 공소장 및 강제 소환장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전기 영장을 영수할 합중국 군 당국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과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거주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서 필요로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이러한 자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또는 대한민국 당국이 지정하는 기타 기관을 통하여 행한다. 증인에 대한 비용과 보수는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2. 증인의 특권과 면제는 그가 출석하는 법원, 재판부 또는 기타 당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부죄의 우려가 있는 증언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이나 합중국 당국의 형사 소송의 진행 중에 어느 일방 국가의 공무상의 비밀의 진술 또는 어느 일방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진술이 소송 절차의 정당한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당국은 이러한 진술에 대한 서면 상의 승낙을 관계 국가의 관계 당국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제7항 (나)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형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 군 당국이 특별히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한다. <신설 2001. 1. 18>

제9항 (가)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수습 기간을 마친 법관으로서 전적으로 구성된 공정한 재판부에 의한 공개 재판을 포함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의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9항 (나)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는 자신과 그의 변호인이 참여한 공개 법정에서 그러한 사유가 밝혀져야 하는 지체 없는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즉시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통지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에 앞서 상당한 기간 전에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증거의 내용을 통지받아야 한다.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가 청구하면 당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대한민국 법원에 송부된 서류 중 대한민국 당국이 수집한 증인의 진술서를 공판 전에 조사하고 녹취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제9항 (다) 및 (라)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모든 소송상의 조사, 재판 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 후의 절차에 있어서 모든 증인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증인을 심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9항 (마)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참여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 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 후의 절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권리와 이러한 변호인과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를 포함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이 협정과 대한민국 국내법 중 보다 유리한 범위 내에서 존중된다. <개정 2001. 1. 18>

제9항 (바)에 관하여

유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

제9항 (사)에 관하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 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 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비수사 또는 어떠한 후속절차에도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합중국 정부대표의 신속한 출석을 보장한다. <개정 2001. 1. 18>

제9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모든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어떠한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권리가 당해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거부되었거나 거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 정부의 대표는 그러한 권리의 거부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합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본조 본항 (가) 내지 (사)에 열거된 권리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가) 유죄 판결 또는 형의 선고에 대하여 상소할 권리,
- (나)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 시설에서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
- (다) 행위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 (라) 혐의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1심 법원의 원 판결 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 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 (마) 범죄의 범행 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증거법칙이나 증명요건에 의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 (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제당하거나 또는 달리 자기 부죄를 강제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 (사) 참혹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 (아) 입법행위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 (자) 동일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 (차)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 (카)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망에 의하거나, 신체 구속의 장기화에 의하여 수집되거나 또는 임의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자백, 자인 또는 기타 진술 및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망에 의하거나 영장 없이 불합리하게 행한 수사 및 압수의 결과로서 수집된 물적 증거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본조에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이 구금되었거나 그러한 개인이 구금될 대한민국 구금시설의 구역을 방문 및 관찰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8>

적대행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재판 이전이거나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의 복역중이거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구금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

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자를 책임 있는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둘 것을 합중국 군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합의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한 사형의 집행 또는 구금,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 기간중 또는 유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도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요청하면 대한민국의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유치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과 언제든지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구금 시설에 유치되고 있는 피구금자와 접견하는 동안, 의류, 음식, 침구, 의료 및 치아 치료 등 보조적인 보호와 물건을 공여할 수 있다.

제5항 (다) 및 제9항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 또는 합중국 군 당국이 이 협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검사와 법무참모 또는 적절한 법무장교는 이러한 위반사실이 일방에 의하여 타방에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문제가 동 10일 이내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어느 측이든지 합동위원회에 당해 상황과 위반사실의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8>
2. 합동위원회가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동 문제가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양측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합동위원회의 양측 대표는 제28조 제3항에 따라 적절한 경로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각자의 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8>

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

1.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통상 모든 체포를 행한다. 이 규정은 합중국 군대의 관계 당국이 동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당국

이 시설과 구역 안에서 체포를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동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중국의 관계 군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의 이러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수색, 압수 또는 검증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 또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전기 재산에 관하여 재판할 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나 그 부속 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합중국은 합중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그 재산을 인도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제15조

제1항

1. 주한미군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 법인을 주한미군의 초청계약자로 사용함이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를 위하여 중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이러한 비합중국 법인에게 이 협정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합중국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노동력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3국 계약자의 고용원을 특권 없이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제22조

제1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1.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후단에 의한 통보가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이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의 계엄령으로 인하여 어느 국가도 평시 대한민국의 민간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합중국 군속과 가족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고 동시에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이 이들을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일반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간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보장하면 합중국 군속 및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항 (나)

대한민국 민간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의 체포·수사 및 재판에 대한 완전한 통할권을 보유한다.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 어떤 자가 특정한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한 경우, 이는 통상 그 자의 “공무” 밖의 행위를 뜻한다.
- 공무증명서는 범무참모의 조언에 따라서만 발급되어야 하며, 장성급 장교만이 공무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

3. (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합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제기하는 여하한 의견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의 하위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검사는 어떠한 의문시되는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무참모 또는 적절한 범무장교와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검사의 동 증명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범무부의 해당 당국자는 어떠한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도 주한미군 범무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과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공무증명서가 지역의 검사에게 최초로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은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만일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가 합당한 기간 내에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회부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공무증명서의 검토지연으로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증명서가 최초로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이 합중국 군 당국은 피의 사실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3 (나)

이 조항에서 대한민국 대표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지는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기한 것은, 이러한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질 때 이에 참관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항 (다)

-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일차적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범죄의 발생을 통보받거나 달리 알게 된 후 21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동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타방 당사국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은 본래의 28일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해 사안을 확인하면서 통상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특정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그 결정을 타방 당사국에 통보하지 아니할 때에는 요청 당사국이 경합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항 (다)

-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히 임명된 합중국 대표의 입회하에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을 신문할 수 있으며 체포 후 신병을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하여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적 대표의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의 순간부터 존재하며 동 권리는 변호인을 출석시킬 권리, 피의자가 출석하는 모든 예비적 수사, 조사, 재판 전 신문, 재판절차 자체 그리고 후속절차에서 그러한 변호인과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들을 포함한다. 합중국 대표는 불편부당한 입회자이어야 하며 합중국 대표와 변호인은 어떠한 신문에도 개입할 수 없다. <개정 2001. 1. 18>

2.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시 또는 기소 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재판 전 구금”(“최종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의 인도요청은 이러한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 제5항 (ㄷ)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어 있거나 추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신설 2001. 1. 18>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은, 제22조 제5항 (ㄷ)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제2항·제3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거나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이를 계속 행한다. <신설 2001. 1. 18>
4.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중대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판 전 구금”(“최종판결 전의 구속”을 의미한다)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신설 2001. 1. 18>
5.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그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 계속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한다. 이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 계속을 위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 당국에게 협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규정은 합중국 군 당국이 수사와 재판을 위한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출석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구금을 인도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2001. 1. 18>

6. 대한민국 당국은 기소 후 그 구금하의 피고인을 상대로, 기소된 범죄사실 또는 그와 동일한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기소될 수 있었던 범죄사실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상황 또는 사건에 관하여 신문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기소된 범죄와는 별개의 범죄사실의 기초를 이루거나 이를 수 있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상황 또는 사건에 관하여서는 동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주한 미군 법무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소 전에 이루어진 변호인 참여 요청은 어떠한 신문에도 적용된다. <신설 2001. 1. 18>
7. 제22조 제5항 (ㄷ)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고 있는 경우,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대한민국 당국은 변호인이 선임되어 합중국 대표와 함께 예비조사에 참여할 때까지 피의자의 신분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신문을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상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변호인 참여가 가능할 때까지 정지된다. <신설 2001. 1. 18>
8.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동안 피의자는 그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후 포기서면에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조사나 신문에 의 변호인 참여도 포기되지 아니한다. 합중국 대표는 또한 피의자가 그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후 이를 알고 자발적으로 포기서면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 포기서면에 서명한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이 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가 적절히 포기되지 아니하는 한, 변호인의 참여 없이 취득된 진술과 이러한 진술로부터 나온 증거는 어떠한 후속 절차에서도 채택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신설 2001. 1. 18>

9.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프라이버시와 무죄 추정은 수사 및 재판절차를 통하여, 특히 현장검증시에 존중된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항은 대한민국 수사당국에 의한 어떠한 신문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1. 1. 18>

10. 대한민국 당국은 재판 전 구금 또는 구속의 시설이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일 것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사전 승인될 것을 보장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합중국의 적절한 대표·변호인 및 가족과의 통상적인 연락 및 접견이 허용되고, 형 확정자와 혼재수감되지 아니하며, 최종형의 선고 전에 징역 또는 노역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가족 접견의 횟수와 시간에 관한 특별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정상근무 시간 중 언제든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견하여,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동안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01. 1. 18>

11. 제22조 제9항 (가)의 요건에 따라

(가) 피의자는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최초로 재판 전 구금에 처하여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 내에 기소되거나 석방되어야 한다.

(나) 1심 재판이 완료되기 전 피고인의 구금은 6월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다) 항소심 재판중의 피고인의 구금은 1심 법원의 결정에 따른 구금 만료일부부터 4월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라) 상고심 재판중의 피고인의 구금은 항소심 법원의 결정에 따른 구금 만료일부부터 4월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신설 2001. 1. 18>

12. 아래의 사유로 재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전항 (나), (다), (라)에 규정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경우,

(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시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한 경우, 또는

(다) 피고인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신설 2001.1.18>

제5항 (라)

안전에 관한 범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의 수중에 있는 피의자의 구금에 관하여는 그러한 구금을 하기에 적절한 경우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9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번호 없는 2번째 문단 (가)

대한민국 법원의 항소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은 항소법원에 의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위한 근거로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포함한 증거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조, 정의.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 (다)에 준하여, 제1조 (다) (1)호 및 (2)호와 관련하여, “자녀”라 함은 친생자녀, 입양자녀, 계자, 그리고 법령 또는 법원이나 입양주선기관의 기타 조치에 의해 그자에 대한 책임과 신체적 보호가 부양자 또는 부양자의 배우자에게 위임된 21세 이하의 피부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부모”라 함은 친생부모, 부양자를 그의 21번째 생일 전에 입양한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 부양자의 배우자를 그의 21번째 생일 전에 입양한 배우자의 양부모, 계부모 및 배우자의 계부모를 뜻한다. “기타 친척”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 또는 법원의 명령이나, 대한민국 또는 합중국의 정부기관에 의해 법적으로 부양자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공인된 피부양자, 그리고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그 밖의 자 내지 범위의 자를 뜻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본 협정에 따라 “기타 친척”의 범위에 속하는 “가족”의 지위를 부여할 때마다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한다.

제22조, 형사재판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5항 (다)에 준하여,

1.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의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로 정의되는 유형의 사건은 합동위원회가 결정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 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양국 정부가 사건별로 처리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이 기소시 구금 인도를 요청하려 하는 경우:
 - (가)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장은 그러한 의사를 명시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는 제대로 기재되어야 하며, 구금을 요하는 자의 성명과 기소될 범죄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동 문서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대한민국 법령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날짜, 시간과 장소가 가능

하면 명시되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사본이 동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나) 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대한민국 당국이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기로 결정하면 검찰제4과장은 그러한 요청을 기재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구금 대상자의 성명과 기소될 범죄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동 문서에는 그 사건이 재판 전 구금인도에 적합한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구금인도시로부터 24시간 내에 기소 또는 석방하겠다는 보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 문서에는 또한 법무감이 구금인도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구금인도 희망 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의 사본이 동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다) 동 문서를 접수한 후, 주한미군 법무감은 대상자의 신병인도를 준비할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기소를 위한 결재를 마친 준비된 공소장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그 후 헌병감은 대한민국 당국에 위 인도 희망일까지 대상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구금 인도 후 24시간 내에 기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대상자는 석방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재판 중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피고인의 구금을 인도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장은 구금인도 요청이 기재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구금 대상자의 성명과 기소될 범죄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동 문서에는 기소될 범죄가 재판 전 구금인도에 적합한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 문서에는 또한 법무감이 구금인도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구금인도 희망 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공소장과 구속영장의 사본이 동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동 문서를 접수한 후, 법무감은 대상자의 신병인도를 준비할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헌병감은 대상자를 위 인도 희망일까지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 당국은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1항에 따라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 전 구금인도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합중국 군 당국이 동의하면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그 구금인도 절차에 적절히 준용된다.
5.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 구금 또는 구속되었을 경우, 그 대한민국 수사당국은 가장 인접한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즉시 체포사실을 통고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그를 인도한다. 합중국 군 당국이 체포된 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헌병감은 그러한 요청을 기재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구금중인 대한민국 수사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구금대상자의 성명과 구금인도 희망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집행유예가 아닌 구금형을 선고받은, 합중국 군 당국 구금하의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인도를 요청하려 하는 경우 그 사건에 관한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면,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장은 그러한 요청을 기재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는 구금 대상자의 성명,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판결 주문과 구금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또한 법무감이 구금인도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구금인도 희망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동 문서를 접수한 후, 법무감은 대상자의 신병인도를 준비할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헌병감은 대상자를 위 인도 희망일까지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 형사재판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2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5항 (다)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제10항에 규정된 재판 전 구금 또는 금족 시설의 기준은,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13호에 규정된 재판 후 구금시설에 관한 합동위원회 설정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미결구금시설간 이송의 경우 신속히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SOFA 운영관련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2. 12. 30)

1. 범죄 현장에서의 수사

- SOFA 적용대상 범죄 현장에서 미군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한국 수사기관은 미군측의 협조를 얻어 독자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피의자, 용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도록 한다.
- 한국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때에는 미군 수사기관이 독자적인 현장조사를 희망할 경우 협조를 제공한다.

2. 신병인도 전 조사와 미 정부대표 출석 요구

미국 정부대표는 하루 중 언제라도 1시간 이내에 출석하게 되어 있으므로, 야간이라도 미국 정부대표의 출석을 적극 요구하여 SOFA 적용대상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 전 조사를 시행한다.

3. 피의자 또는 참고인 소환

SOFA 적용대상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피의자 뿐만 아니라 미군인,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 신분을 가진 참고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4. 무죄추정 원칙과 프라이버시 존중

- 수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촬영 또는 언론보도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프라이버시와 무죄추정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특히 사진기자 등을 수사기관 내부로 초청하여 피의자 등을 사진촬영하게 하거나 면담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명요구

- 형사소송법 제48조 및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조

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되, 피의자 등이 서명 거부의를 표명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48조에 따라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한다.

- 피의자 등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에 반하여 서명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수사관련 자료 등 제출 협조

- SOFA 적용대상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미군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자료, 장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군에게 자료제출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7. 이 지침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끝.

경찰청에서 종합관리하는 「기본매뉴얼」은

기능별 대분류·업무단위별 중분류를 정한 후, 발간순서에 따라 소분류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번호를 정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번호
경 무	① 기획 ② 경리·예산 ③ 법무 ④ 인사교육 ⑤ 장비 ⑥ 총무
생활안전	① 범죄예방 ② 지역경찰운동 ③ 지도·단속 ④ 여성·청소년
수 사	① 인권 ② 수사일반 ③ 과학수사 ④ 지능범죄수사 ⑤ 강력범죄수사 ⑥ 사이버범죄수사
경 비	① 일반경비 ② 집회·시위관리 ③ 경호·대테러 ④ 작전실무 ⑤ 전·의경 관리 ⑥ 항공대운영
정 보	① 정보일반 ② 집시법 운용
보 안	① 보안일반 ② 보안수사
공 보	① 공보
감 사	① 감찰 ② 감사 ③ 민원업무
정보통신	① 정보통신
외 사	① 외사기획 ② 국제보안 ③ 외사정보 ④ 외사수사
교 통	① 면허 ② 관제 ③ 교통사고 ④ 교통단속

그동안 발간된 기본매뉴얼

연번	관리번호	매뉴얼명	구분	발간일	발간부서
1	경무 2-1	관서운영경비 매뉴얼	전문	'05. 4	총무과
2	경무 5-1	경찰장비실무 매뉴얼	전문	'04.12	경무기획국
3	경무 6-1	보안업무편람(매뉴얼)	일반	'03.11	총무과
4	생활안전 3-1	보호조치대상자 처리 매뉴얼	일반	'04. 5	생활안전국
5	생활안전 3-2	유실물처리 매뉴얼	일반	'04.10	생활안전국
6	수사 1-1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일반	'05. 4	수사국
7	수사 2-1	출입국규제, 알고 합시다(매뉴얼)	일반	'03. 9	수사국
8	수사 3-1	범죄현장감식기법	전문	'03.11	수사국
9	수사 3-2	수사자료표의 이해(매뉴얼)	전문	'03.11	수사국
10	수사 3-3	범죄수법수사	전문	'03.10	수사국
11	수사 5-1	마약류범죄수사 매뉴얼	전문	'03. 9	수사국
12	수사 5-2	조직폭력 수사 매뉴얼	전문	'05. 4	수사국
13	수사 6-1	사이버수사현장핸드북(매뉴얼)	전문	'03.10	수사국
14	경비 1-1	치안상황처리 매뉴얼	일반	'05. 4	경비국
15	경비 2-1	주요시설 기습시위 대처요령(매뉴얼)	일반	'04. 5	경비국
16	경비 5-1	전·의경 자체사고 예방 및 처리 매뉴얼	일반	'02.11	중앙학교
17	경비 6-1	항공대 운영 매뉴얼	전문	'04. 7	서울청
18	정보 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운용 매뉴얼	전문	'05. 4	정보국
19	정보통신 1-1	경찰정보통신운용 매뉴얼	전문	'02. 8	중앙학교
20	교통 3-1	대형교통사고처리 매뉴얼	일반	'04.12	교통관리관
21	교통 3-2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매뉴얼	일반	'04. 9	교통관리관
22	경무 4-1	인사실무 매뉴얼	전문	'05. 4	경무기획국
23	수사 4-1	시위사범수사 매뉴얼	전문	'05. 4	수사국
24	수사 4-2	공직선거사범수사 매뉴얼	전문	'05. 4	수사국
25	경비 3-1	테러 예방과 대응 매뉴얼	일반	'05. 4	경비국
26	교통 2-1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전문	'05. 4	교통관리관
27	정보통신 1-2	정보통신관리 매뉴얼	전문	'05. 5	정보통신
28	경비 2-2	집회시위현장 인권보호 매뉴얼	일반	'05. 5	경비국
29	경무 1-1	국회업무 매뉴얼	전문	'05. 6	경무기획국
30	수사 4-3	신용카드범죄 수사 매뉴얼	전문	'05. 6	수사국
31	수사 4-4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사건 처리 매뉴얼	전문	'05. 6	수사국
32	외사 4-1	SOFA사건 처리 매뉴얼	일반	'05. 6	외사관리관
33	생활안전 1-1	절도예방 및 현장조치 매뉴얼	일반	'05. 6	생활안전국

본 매뉴얼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처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외사3과

전 화 : 02)313-0714, 경비 2878, 2978

F A X : 02)365-5797, 경비 3877

SOFA 사건 처리 매뉴얼(외사 4-1)

2005년 6월 일 인쇄

2005년 6월 일 발행

발행처 : 경찰청

인쇄 : (주)범신사

02)720-9786~9